



의안번호	제 2010 - 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3. 22. (제24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추진 경과	1
1. 조사계획	1
2. 조사현황	1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경과	2
1. 개요	2
2. 관련 규정	2
3. 추진 내역	3
III.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5
1. 사건 접수	5
2. 처리 현황	10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14
V. 전문위원 위촉	14
1. 개요	14
2. 추진 내역	14
VI.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선 추진	15
1. 현황	15

2. 추진방향	16
3. 추진계획	16
VII. 제1기 양형기준 운영현황 점검	16
1. 개요	16
2. 분석 목적	16
3. 분석 대상	17
4. 분석 경과	17
5. 분석 내용	17

※ 다만, ‘VII. 제1기 양형기준 운영현황 점검’ 안건의 보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추진 경과

1. 조사계획

가. 개요

- 위원회 제23차 회의(2010. 2. 8.) 회의자료에서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됨

나. 조사기간

- 2010. 2. 22. ~ 2010. 4. 29.

2. 조사현황

2010. 3. 11. 현재

	조사대상 검찰청	조사기간	조사예정 건수	조사완료 건수(%)		조사완료 여부	비고
				기록조사	범죄 경력조회 (%)		
1팀	서울중앙지검	2.22. ~ 4.9.	744	303		계속	
				303	0		
2팀	서울동부지검	2.22. ~ 3.10.	262	223		완료	기록폐기 등 으로 39건 조사 못함
				223	0		
3팀	서울남부지검	2.22. ~ 3.16.	343	232		계속	
				232	0		
4팀	의정부지검	2.22. ~ 3.2.	176	176		완료	
				145	31 (17.6)		
	고양지청	3.3. ~ 3.8.	111	111		완료	
			101	10(9)			
	서울서부지검	3.9. ~ 3.23.	249	82		계속	
				82	0		

	조사대상 검찰청	조사기간	조사에정 건수	조사완료 건수(%)		조사완료 여부	비고
				기록조사	범죄 경력조회 (%)		
5팀	대전지검	2.22. ~ 3.4.	189	188		완료	단독·합의사건 중복으로 조사 완료건수에서 제외 (대전지검,1건)
				162	26 (13.8)		
	홍성지청	3.5. ~ 3.9.	50	50		완료	
				48	2 (4)		
6팀	대구지검	2.22.~ 3.4	286	286		완료	
				236	50 (17.5)		
	대구서부지청	3.5.~ 3.8.	28	28		완료	
			28	0(0)			
	안동지청	3.9.~ 3.10.	31	31		완료	
				28	3(9.7)		
합계				1,710 (28.2)			
				1,588	122 (7.1)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경과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추진 내역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내용을 토대로 양형위원회 제23차 회의(2010. 2. 8.)에서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대상 기관

순번	구분	기관	비고
1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2	입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	행정부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4		경찰청	생활안전국

순번	구분	기관	비고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실
6		국 방 부	법무관리관실
7		대 검 찰 청	공판송무부
8		법 무 부	검찰국
9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아동청소년정책실
10		여 성 부	여성정책국
11	헌법기관	헌 법 재 판 소	
12	독립기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실
13	연구기관	한 국 교 정 학 회	
14		한 국 법 학 원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16		한 국 보 호 관 찰 학 회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19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20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21		한 국 피 해 자 학 회	
22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23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24	변 호 사 협 회	대 한 변 호 사 협 회	
25	법 무 사 협 회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6	변 호 사 체 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순번	구분	기관	비고
2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29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30	경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1		대한 Y W C A 연합회	
32		전국경제인연합회	
33		중소기업중앙회	
3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3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6		한국 Y M C A 전국연맹	
37		한국성폭력상담소	
38		한국여성단체연합	

다. 진행 경과

- 의견조회 발송 : 2010. 3. 3.
- 의견조회 취합 : 2010. 3. 3. ~ 2010. 4. 2.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25차 회의(2010. 5. 중순 예정) 시 보고 예정

III.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0. 2. 28.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157	0	0	157
	살인미수	231	0	0	231
	존속살해	13	0	0	13
	존속살해미수	8	0	0	8
뇌물죄	뇌물공여	76	237	7	320
	뇌물수수	61	137	0	198
	부정처사후수뢰	7	5	0	12
	수뢰후부정처사	6	1	0	7
	제3자뇌물교부	6	4	1	11
	제3자뇌물취득	3	3	0	6
	특가범(뇌물)	45	0	0	45
성범죄	강간	50	1	0	51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61	0	0	61
	강간치상	165	0	0	165
	강도강간	7	0	0	7
	강제추행	13	165	183	361
	강제추행상해	15	0	0	15
	강제추행치상	55	4	0	59
	미성년자의제강간	6	0	0	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0	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16	4	23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19	2	3	224
	성폭법(강간등살인)	2	0	0	2
	성폭법(강간등상해)	57	0	0	57
	성폭법(강간등치상)	68	0	0	68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5	19	1	75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법(절도강간등)	10	0	0	10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34	0	0	134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2	0	0	22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5	1	0	3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1	0	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0	0	5
	성폭법(특수강간)	141	0	0	141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35	0	0	35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1	0	0	11
	성폭법(특수준강간)	50	0	0	50
	아동·청소년성보호(강간등)	11	1	0	12
	준강간	35	0	0	35
	준강간치상	4	0	0	4
	준강제추행	10	48	29	87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40	4	25	269
강도죄	강도	55	0	0	55
	강도살인	8	0	0	8
	강도상해	308	0	0	308
	강도치사	1	0	0	1
	강도치상	18	0	0	18
	준강도	39	0	0	39
	준특수강도	5	0	0	5
	특가법(강도)	6	1	0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0	0	2
	특수강도	197	6	0	203
횡령배임죄	배임	7	338	60	405
	업무상배임	8	161	36	205
	업무상횡령	25	1,038	320	1,383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특경가범(배임)	112	5	0	117
	특경가범(횡령)	126	1	0	127
	횡령	16	964	433	1,413
위증죄	모해위증	0	9	0	9
	위증	19	834	190	1,043
	위증교사	4	74	4	82
무고죄	무고	11	857	303	1,171
	특가범(무고)	6	0	0	6

◆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76	0	0	76
	살인미수	101	1	0	102
	존속살해	10	0	0	10
	존속살해미수	2	0	0	2
뇌물죄	뇌물공여	54	37	1	92
	뇌물수수	20	29	0	49
	부정처사후수뢰	6	2	0	8
	수뢰후부정처사	10	1	0	11
	제3자뇌물교부	4	3	0	7
	제3자뇌물취득	1	1	0	2
	특가범(뇌물)	29	1	0	30
성범죄	강간	71	0	0	71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52	0	0	52
	강간치상	64	0	0	64
	강도강간	17	0	0	17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	16	95	81	192
	강제추행상해	6	0	0	6
	강제추행치상	26	1	0	27
	미성년자의제강간	2	0	0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1	0	2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9	0	0	79
	성폭법(강간등살인)	3	0	0	3
	성폭법(강간등상해)	40	1	0	41
	성폭법(강간등치상)	50	0	0	50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9	0	0	9
	성폭법(절도강간등)	10	0	0	10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82	0	0	82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1	0	0	3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0	0	1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0	0	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0	0	5
	성폭법(특수강간)	106	0	0	106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17	0	0	117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5	0	0	15
	성폭법(특수준강간)	28	0	0	2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	0	0	2
	준강간	12	0	0	12
	준강간치상	1	0	0	1
	준강제추행	2	13	1	16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3	1	3	97
	강도죄	강도	71	5	0
강도살인		21	0	0	21
강도상해		280	4	0	284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도치사	3	0	0	3
	강도치상	23	0	0	23
	준강도	23	0	0	23
	준특수강도	3	0	0	3
	특가범(강도)	3	0	0	3
	특가범(강도상해등재범)	8	0	0	8
	특강범(특수강도)	2	0	0	2
	특수강도	208	4	0	212
횡령배임죄	배임	6	52	3	61
	업무상배임	12	121	9	142
	업무상횡령	37	398	55	490
	특경가범(배임)	72	4	0	76
	특경가범(횡령)	119	2	0	121
	횡령	14	312	58	384
위증죄	모해위증	0	6	0	6
	위증	6	61	3	70
	위증교사	0	5	0	5
무고죄	무고	4	179	40	223
	특가범(무고)	5	0	0	5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서 2010. 2. 28.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수	392	0	0	392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108	235	3	346
	비율	31.2%	67.9%	0.9%	100.0%
성범죄	수	1,437	153	99	1,689
	비율	85.1%	9.1%	5.9%	100.0%
강도죄	수	797	1	0	798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198	1,631	419	2,248
	비율	8.8%	72.6%	18.6%	100.0%
위증죄	수	10	490	74	574
	비율	1.7%	85.4%	12.9%	100.0%
무고죄	수	11	441	139	591
	비율	1.9%	74.6%	23.5%	100.0%
전체	수	2,953	2,951	734	6,638
	비율	44.5%	44.4%	11.1%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살인죄	살인	143
	살인미수	226
	존속살해	17
	존속살해미수	6
	전체	392
뇌물죄	뇌물공여	219
	뇌물수수	81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부정처사후수뢰	5
	수뢰후부정처사	4
	제3자뇌물교부	5
	제3자뇌물취득	5
	특가법(뇌물)	27
	전체	346
성범죄	강간	60
	강간살인	2
	강간상해	71
	강간치상	165
	강도강간	10
	강제추행	212
	강제추행상해	13
	강제추행치상	53
	미성년자의제강간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5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2
	성폭법(강간등살인)	4
	성폭법(강간등상해)	58
	성폭법(강간등치상)	71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43
	성폭법(절도강간등)	16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5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성폭법(특수강간)	134
성폭법(특수강간등)	2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95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4
	성폭법(특수준강간)	19
	준강간	17
	준강간치상	4
	준강제추행	45
	준강제추행치상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32
	전체	1,689
강도죄	강도	87
	강도살인	17
	강도상해	340
	강도치사	1
	강도치상	25
	준강도	56
	준특수강도	9
	특가법(강도)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특강법(특수강도)	1
	특수강도	251
	전체	798
횡령배임죄	배임	196
	업무상배임	120
	업무상횡령	954
	특경가법(배임)	45
	특경가법(횡령)	85
	횡령	848
	전체	2,248
위증죄	모해위증	3
	위증	474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위증교사	97
	전체	574
무고죄	무고	586
	무고교사	2
	특가법(무고)	3
	전체	591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시	안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23차	2010. 3. 9. 19:15	○ 제3차 공청회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2팀 회의	제19차	2010. 3. 4. 19:00	○ 제3차 공청회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V. 전문위원 위촉

1. 개요

- 2010. 3. 10.자로 일부 전문위원(3명)에 대한 임기만료
 - 임기만료 전문위원 : 강영수, 김현석, 윤정근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2. 추진 내역

가.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 종전 연구성과를 토대로 추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나. 위촉 방안

- 연임 위촉 : 강영수 수석전문위원, 김현석 전문위원, 윤정근 전문위원(3명)

다. 진행 경과

- 2010. 3. 8. 위촉(안) 결재 보고
- 2010. 3. 11. 위원장 결재
- 2010. 3. 22. 위촉식 실시

VI.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선 추진

1. 현황

- 양형위원회는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의 메뉴 중 하나인 ‘양형위원회’를 통하여 양형위원회 관련 내용을 소개
- 하위 메뉴로, ‘위원회 소개(위원장님 인사말씀, 위원 소개, 위원회 소개)’, ‘양형기준’, ‘자료마당(회의자료 등 소개)’, ‘새소식(양형위원회 회의 안내)’, ‘보도자료’, ‘자주하는 질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란을 두고, 양형위원회와 그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2. 추진방향

-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게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개축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의 개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하여 일반인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업무의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3. 추진계획

- 2010. 3. : 홈페이지 개선방안의 확정
- 2010. 3.말 내지 4.초경 : 홈페이지 개선방안의 시행

VII. 제1기 양형기준 운영현황 점검

1. 개요

-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 4. 24.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위 양형기준은 2009. 7. 1.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임(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석 목적

-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파악

- 양형기준으로 인한 효과 파악
- 양형기준의 개선사항 파악

3. 분석 대상

- 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09. 12. 31.까지 선고된 제1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4. 분석 경과

- 2010. 1. 중순 : 제1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판결문 수집 및 주요 내용 파악
- 2010. 1. 하순 : 인자 등 입력 및 수정
- 2010. 2. 중순 : 각종 분석결과 수집
- 2010. 3. : 문서작업 및 정리

5. 분석 내용

- 별첨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기재와 같음